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요양기관 등의 결정신청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결정 근거와 요양급여 결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던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행위·치료재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결정 요건을 대체가능한 진료·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진료·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요양급여 결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가로 사용하려는 수입 의료기기를 장기이식에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밖에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현실 운영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환경부령 제67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영 제9조제1호”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의 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의 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협회의 장”을 각각 “기술원장”으로 한다.

제53조제2호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물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 질 정 보	함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함량 및 함량범위(%)		
	상품 취급수량(톤)	사용량	
		판매량	
		제조량	
		수입량	
	화학물질 사용(가능)용도		
화학물질 사용제한용도			
화학물질 노출정보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협회의 장”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5항, 제27조제4항·제5항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결과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 확인의 신청에 관한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에 대한 실적의 보고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 및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되고, 환경부장관 권한의 위탁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추가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91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위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신설·변경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접수 업무 등에 관한 수탁기관 변경(안 제7조 및 안 제8조)  
 지금까지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이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접수를 받고,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의 수탁업무를 앞으로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이 하도록 함.

나.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시 공동제출자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신설)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자들의 공동대표자가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의 합의 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접수 업무 등에 관한 수탁기관 변경(안 제 42조)  
 지금까지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이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접수를 받고,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면제확인증을 내어주도록 하는 등의 수탁업무를 앞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4제3항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거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강사의 자격 등 건설업 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3(하도급계획의 제출)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의 신청내용란 중 “재교부”를 “재발급(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개정서식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